

# 學校圖書館의 政策 어떻게 할 것인가?

— 學校圖書館의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 —

박 용 두

<태릉고등학교 사서교사>

## I. 또 한번의 주제넘은 主張일까?

이 大會에 참석하신 圖書館 동지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學校教育의 本質 및 目的 추구하고 그 정립을 위하여 남몰래 애태우면서 수고하시는 司書教師 同僚 여러분!

淺學非才에 학교도서관 봉사도 日淺한 제가 斯界의 훌륭하신 많은 대선배님들을 대신하여 '21세기 學校圖書館政策'에 관한 主題發表를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저 개인으로서는 더할 나위없는 광영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시된 어마어마한 主題에 대하여 발표하려 하니 후배의 한 사람으로 솔직히 말씀드려 너무나 주제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쓰디 쓴 웃음을 먼저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21세기 학교도서관정책이 과연 어떤 內容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주장하려면 우선 학교도서관으로서의 필요한 基本要件<sup>1)</sup>은 어느정도 갖추고 그후에 현상태보다 '더 나은' 도서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政策이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실은 학교교육의 필수기본시

설이면서도) 구비하여야 할 기본요소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학교는 한국에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함은 마치 虛空을 치는 듯한 空理空論이 되지 않을까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학교도서관 선배님들과 이에 관심 깊은 분들이 과거 40여년간 한국도서관협회 代辯誌와 이 大會의 主題發表를 통하여 거의 매회마다 '學校圖書館 機能正常化方案'을 제시·주장·건의하여 왔다.<sup>2)3)</sup>

심지어 어떤이는 國會에 請願까지 한 바도 있다.<sup>3)</sup> 그렇다면 그들의 그 절실한 목소리들은 '21세기 학교도서관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한탄에 불과했던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의 그 애절한 教育的 呼訴는 모두 21세기를 겨냥한 主張이라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들의 建議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알곡 그대로 엮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本人은 오늘의 이 主張發表는 지난 40여년간 韓國圖書館協會를 통하여 活動했던 學校圖書館 先輩任들의 수고와 노력의 結晶體를 '또 한번' 주제넘게 쫓아 모아 곱게 닦아 玩賞하는 일에 불과하다 하겠습니까.

1) 기본요건(요소)은 시설·자료 그리고 司書教師의 배치임

2) 별표1 학교도서관 관계자료 (도협월보 1960-1980, 도서관연구 1981, 도협회보 1981-87, 도서관문화 1988-1991)

별표1-1 全國圖書館大會 主題發表 총람 (1962-1990)

3) 1985. 9. 10 박용두의 12인이 교육법79조①항 별표1중 사서교사조항을 1.2급 사서교사로 구분할 것을 내용으로한 청원임.

<별표 1>

學校圖書館 關係資料

(도협월보, 도서관연구, 도협회보, 도서관문화 1960~1990)

※ \*표는 도서관육성책 건의내용포함

연번	논	제	저	자	발표연월
1	學校圖書館	이렇게 만들었다	金	京 一	도협월보 '60. 3
2	경남의 학교도서관운동		金	斗 弘	" '60. 5
3	국민학교도서관(인천 昌英국민학교) 현황				" '60. 6
4	1960년도의 學校圖書館 회고		金	京 一	" '60.12
*5	學校圖書館의 三要素-실효있는 학교도서관 기준명제정 촉구-		金	斗 弘	" '60. 3. 4
6	司書教師의 生活과 意見		金	容 灝	" '61. 6
7	學校圖書館 Staffmanual		金	京 一	" '62. 4
*8	학교도서관의 당면 諸問題		李	珪 範	" '62. 7
9	學校圖書館運營의 實際		金	京 一	" '62. 7
10	鄉土學校圖書館設置를 촉구함		전	남여천여중	" '62. 9
11	농촌에 있어서의 학교도서관운영-경남고성농고-		文	璣 榮	" '62.12
12	1962年の 學校圖書館		崔	根 滿	" '62.12
13	1963경남 학교도서관 지도계획		경	남도교육국	" '63. 3
14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의 실제-제물포교도서관중심-		崔	根 滿	" '63. 4
15	학교도서관연구활동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金	京 一	" '63. 5
16	학교도서관의 움직임-마산중학교도서관중심-		文	璣 榮	" '63. 6
17	학교도서관 연구 시험보고-서울안산국민학교-				" '63. 6
18	영사실을 겸용하는 학교도서관운영의 실제-부산상고도서관 중심-		李	炳 壽	" '63. 6
*19	도서관법은 왜 필요한가-초·중등교육을 중심-		李	鍾 文	" '63. 6
*20	도서관법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사서교사 양성면에서-		張	一 世	" '63. 7. 8
21	도서위원의 조직과 활동-학교도서관운영면에서-		金	京 一	" '63. 9.10
22	全南지구 학교도서관 시찰소감		張	一 世	" '63. 9.10
23	學校圖書館의 獎學活動		金	斗 弘	" '64. 1. 2
*24	教育方法의 改善과 學校圖書館		趙	載 厚	" '64. 3
25	學校圖書館獎學指導計劃		金	斗 弘	" '64. 3
26	學校圖書館 심포지움				
	1)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役割		鄭	泰 時	" '64. 4
	2) 學校圖書館과 教育方法의 改善		金	鍾 喆	" '64. 4
	3) 資料센터로서의 學校圖書館		李	鳳 順	" '64. 4
*27	學校圖書館發展의 問題點(施行令에 要望되는 基準과 司書教師 問題를 中心으로)		崔	根 滿	" '64. 4

연번	논 제	저 자	발표연월
28	우리나라의 學校圖書館 現況		도협월보 '64. 4
29	學校圖書館 資料의 諸問題(도서구입비문제)	李 珪 範	" '64. 5
30	美國의 司書教師 教育計劃(上)(1900~1944)	Mary Alice	" '64. 6
		Lohrer 著	
		金 京 一 譯	
31	美國의 司書教師 教育計劃(中)	Mary Alice	" '64. 7. 8
		Lohrer 著	
		金 京 一 譯	
32	내가 처음 始作한 學校圖書館	朴敬源, 秋月映	" '64. 7. 8
33	司書教師 講習會		"
34	美國의 司書教師 教育計劃(下)	Mary Alice	" '64. 9
		Lohrer 著	
		金 京 一 譯	
	學校圖書館大會 會議錄(64. 9. 25-26)		
*35	1) 道規模 教育委員會의 學校圖書館 獎學指導	金 斗 弘	" '64. 11
36	2) 讀書指導가 學校教育에 미치는 影響	權 濼 遠	" '64. 11
37	3) 教育公務員法에 있어서의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의 問題 點	金 斗 弘	" '64. 12
38	1964年の 學校圖書館	金 斗 弘	" '64. 12
39	學校圖書館의 P.R. 問題	崔 根 滿	" '64. 12
40	郷土資料의 蒐集整理小考(學校圖書館에 있어서)	河 龍 泰	" '64. 12
41	第三回 全國學校圖書館大會 現況報告	최 근 만	" '64. 12
42	圖書館法施行令(全文)		" '65. 3
43	學校圖書館 參考業務의 效果的인 方法	張 琯 鎮	" '65. 5
*44	國民學校圖書館教育	柳 在 植	" '65. 5
45	全州高等學校圖書館	崔 渡 喆	" '65. 6
46	全國學校圖書館 現況報告		" '65. 6
47	五賢中 · 高等學校圖書館(도서분류표, 도서기호표 참고)	高 泰 湜	" '65. 7. 8
48	1965年度 司書教師講習		" '65. 7. 8
49	馬山中學校圖書館	文 璣 榮	" '65. 9
50	圖書館人이 본 司書教師와 讀書	尹 載 遠	" '65. 10
51	兒童圖書選定の 諸問題	李 康 壽	" '65. 11
52	龍山中 · 高等學校圖書館	홍 래	" '65. 11
53	1965年度 學校圖書館의 回顧	崔 根 滿	" '65. 12
*54	司書教師의 專門性	金 京 一	" '65. 12
55	教育大學에 있어서의 圖書館教育(學校圖書館運營教授要因(1, 2學年))		" '65. 12
56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國語學習과 讀書指導方案(中學校 國語學習을 돕는 讀書指導用 作家와 作品目錄을 中心으로)	林 明 玉	" '65. 12

연번	논 제	저 자	발표연월
57	國語敎育과 學校圖書館	李 鍾 錄	도협일보 '66.1.2
58	麗水東國民學校圖書館	郭 眞 鎔	" '66.1.2
59	圖書館法施行令規則		" '66. 3
60	鄉土學校와 學校圖書館	郭 眞 勇	" '66. 3
61	어린이 도서관의 문제점	김 효 정	" '66. 3
62	圖書館學習의 基礎的機能으로서의 노오트하는법과 書目 만드는법	金 斗 弘	" '66. 4
63	慶南敎委의 66年度 學校圖書館 育成計劃	慶 南 敎 委	" '66. 5
64	學校圖書館이 兒童敎育에 미치는 영향	李 康 壽	" '66. 6
65	學校圖書館의 圖書配架	金 斗 弘	" '66. 6
*66	學校圖書館運動의 現在와 進路(司書敎師의 進路問題)	李 珪 範	" '66.7.8
67	學校圖書館의 圖書紹介活動	金 斗 弘	" '66.7.8
68	學校圖書館의 閱覽奉仕	金 斗 弘	" '66. 9
69	國民學校兒童의 讀書指導와 그의 問題點	宋 永 守	" '66.10
70	國民學校에 있어서의 讀書指導計劃	郭 眞 鎔	" '66.10
71	學校圖書館用 主題名標目標의 편찬제언함	趙 基 弘	" '66.10
72	學校圖書館의 參考業務	金 斗 弘	" '66.11
73	雜誌의 整理(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	趙 基 弘	" '67.1.2
74	圖書力指導는 學歷向上的 밑거름이 되었다(讀書力不振兒 "鍾植"이의 圖書館利用, 指導實踐記)	金 完 起	" '67. 5
75	學校圖書館基準(1967年) 1) 學校圖書館의 目的 2) 學校圖書館의 職員 3) 學校圖書館의 資料 4) 學校圖書館의 施設 5) 學校圖書館의 經費 6) 學校圖書館의 運營 7) 學校圖書館의 敎育	한국도서관협회	" '67. 6
76	새로운 讀書指導의 方向	趙 載 厚	" '67.7.8
77	中·高等學校 圖書館敎育過程의 構成과 그 發展	趙 基 弘	" '67.11
78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視聽覺資料의 整理	趙 基 弘	" '67.11
79	中學校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 利用指導의 效果的인 方案	權 濬 遠	" '67.12
80	文敎部の 劃企의 措置로 33名의 司書敎師定員 配定		" '68.1.2
81	第11回 全國敎育研究大會 學校圖書館分科研究發表會 參觀記	金 京 一	" '68.1.2
82	中·高等學校長 세미나 計劃		" '68. 3
83	學校圖書館 管理事務의 合理化	金 京 一	" '68. 5
84	圖書館資料의 選擇, 構入, 整理에 있어서의 學校間의 協同問題	趙 基 弘	" '68. 6
85	漫畫가 兒童의 讀書活動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1)	柳 在 植	" '68.11

연번	논 제	저 자	발표연월
86	漫畫가 兒童의 讀書活動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2)	柳 在 植	도협월보 '68.12
87	1968年度の 學校圖書館界	趙 載 厚	" '69.1.2
88	1969年度の 學校圖書館界	朴 致 旭	" '69.12
89	學校圖書館行政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金 斗 弘	" '70. 2
90	현대교육 사조와 산 학교도서관	유 인 종	" '70. 8
91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개선의 필요성	趙 載 厚	" '70. 8
92	자율학습을 돕는 학교도서관운영	윤 영 길	" '70. 8
93	민주적 시민성 양성을 위한 독서지도	조 기 흥	" '70. 9
94	學校圖書館을 위한 저자기호법의 연구	이 재 철	" '70.12
95	학교도서관의 사서직의 자질문제	원 종 린	" '71.10
*96	사서직의 신분인사문제	趙 載 厚	" '71.10
97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생의 독서습관화	金 斗 弘	" '71.11
98	학교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권 양 일	" '71.12
99	학교도서관을 통한 새마을 교육 전개계획에 대하여	윤 영 길	" '72. 4
100	교과서 개편에 따르는 도서관 이용지도 문제	趙 載 厚	" '72.10
*101	학교도서관 관계법규의 문제점	金 斗 弘	" '73. 1
*102	中等學校平準化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問題點	玄 源 明	" '73.10
103	새마을교육과 학교도서관	최 태 정	" '73.11
105	地區協議會, 部會, 協議會의 活動現況과 計劃(學校圖書館部會)	李 正 熙	" '74.5
106	各市·道路 學校圖書館 運營實態와 問題點		
	1)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玄 源 明	" '74. 8
	2) 충청남도의 학교도서관	權 濘 遠	" '74. 8
	3) 전라북도의 학교도서관	田 俊 燮	" '74. 8
	4) 전라남도의 학교도서관	최 태 정	" '74. 8
*107	學校圖書館 운영상의 諸般問題 分析	소 시 중	" '74. 8
108	학교도서관 회고와 전망	徐 章 錫	" '74.12
109	教育法 基本精神과 司書教師의 問題	蘇 時 重	" '75. 4
110	독서지도를 위한 독서교과 단원의 실제	金 承 煥	" '75. 5
*111	學校圖書館發展을 위한 圖書館 政策	李 正 熙	" '75.12
112	학교도서관 장서중 국어과 교사용자료의 평가	韓 允 玉	" '76. 3
*113	학교도서관이 나아갈 길	趙 載 厚	" '76. 5
114	도서관교육 수업모형(안)	이 근 철	" '76. 5
115	학교도서관과 독서지도의 문제	李 正 熙	" '76. 9
116	독서행동 문제아에 대한 독서상담 요령에 관한 소고	孫 正 彪	" '76. 9
117	중학교에서의 독서지도	朴 泰 臣	" '76.10
118	학급문고를 통한 학습증진형성에 관한 연구	소 시 중	" '76.11
119	국민학교 학급담당교사가 차지하는 도서관적업무 내용에 관한 고찰	어 근 철	" '77. 4

연번	논 제	저 자	발표연월
120	한국의 고등학교 도서관 직원에 관한 연구	李 弘 榮	도협월보 '77. 5
121	교과별 기본자료목록작성, 활용을 통한 고등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연구	李 斗 炯	" '77.7. 8
122	1977年 도서관계의 회고-학교도서관계-	蘇 時 重	" '77.12
123	학교도서관(觀我臺)	소 시 중	" '78. 3
124	학교도서관을 통한 중·고등학교 독서교육방법	김 승 환	" '78. 3
125	현대교육과 학교도서관	일본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 택 준 역	" '78. 3 " '78. 3
126	司書教師生活 3개년을 회고하면서	박 용 두	" '78.3
127	아동독서지도의 효율적인 방법	金 完 起	" '78. 5
128	중·고등학교 독서현장교육방법과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	金 承 煥	" '78.8.9
*129	한국선진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육성책	李 珪 範	" '78.10
130	독서지도 4년간을 회고하면서	박 용 두	" '79.1.2
131	어린이를 위한 독서	金 世 翊	" '79.7.8
132	독서지도계획	趙 載 厚	" '79.7.8
133	독서발전과정의 체계화·표준화	朴 鵬 倍	" '79.7.8
*134	사서교사의 인사제도 문제	朴 泰 臣	" '80.10
*135	학교도서관관계 법규에 대한 고찰	金 坪 勳	도서관연구 '81.3.4
*136	현행교육법상의 사서교사문제 및 개정안	도 협 사 무 국	'81.7.8
137	평생교육과 도서관	金 世 翊	'81.7.8
			('82-84 全無)
138	학습지도체제개발을 위한 설계자로서의 사서교사의 의의와 역할-역할과 기능중심으로-	崔 星 洛	도협회보 '85. 1. 2
*139	학교도서관과 도서관법 개정방향	李 正 熙	" '86.11.12
140	초·중·고등학교 '학생독서비'부활의 필요성-도서관 현안문제 정책자료-	한 도 협	" '87. 3. 4
*141	학교도서관의 제문제	金 容 喆	도서관문화 '88.1.2
14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 자료이용상의 협력방안	손 경 숙	" '88. 3. 4
143	미래의 학교도서관	김 동 철	" '88.11.12
144	한국도서관협회에 바란다	李 正 熙	" '89. 3. 4
*145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金 容 喆	" '89. 7. 8
*146	사서교사 무엇을 할 것인가?	朴 容 料	" '89. 7. 8
*147	새도서관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제문제	李 珪 範	" '90. 1. 2
148	독서의 본질과 그 과정	Gray, W. S 김 효 정	" '90. 5. 6

<별표 1-1>

全國圖書館大會 主題發表 총람  
(학교도서관 관계)

회	시 기	장 소	발 표 주 제 명	발 표 자
1	1962, 7. 21-22	승의여고 (71명)	1. 學校圖書館 運營의 實際 2. 學校圖書館이 當面한 諸問題	金 京 一 李 珪 範
2	1963, 9. 19-20	부산여중 (267명)	1. 學校圖書館의 獎學活動 2. 學校圖書館의 基本施設 問題 3. 學校圖書館 資料의 問題點 4. 學校圖書館 運營의 諸問題 5. 現行基準令과 學校圖書館現況	金 斗 弘 崔 根 滿 李 珪 範 金 京 一 趙 載 厚
3	1964, 9. 25-27	대구상고 (204명)	1. 學校圖書館의 獎學指導가 要請되는 點 2. 學校教育에 있어서 讀書指導는 어떤 影響을 주나 3. 學校圖書館奉仕의 PR 問題 4. 教育公務員法에 있어서 司書教師의 자격기준 의 문제점	金 斗 弘 權 濬 遠 崔 根 滿 金 鍾 喜
4	1964, 4. 25-27	대구상고 (185명)	1. 學校圖書館 참고봉사의 效果的인 方法 2. 國民學校 圖書館教育 3. 圖書館施行令과 學校圖書館 4. 圖書館施行令에 따른 司書教師 訓練問題	張 瑄 鎮 柳 泰 植 崔 根 滿 李 珪 範
5	1966, 5. 19-19	제주진성 여고	1. 學校圖書館이 아동교육에 미치는 影響 2. 人文高校圖書館奉仕의 문제점 3. 아동독서상담을 통한 조사연구 4. 道教育委員會의 學校圖書館 指導方向 5. 學校圖書館運動의 現在와 進路	李 康 壽 吳 榮 煥 宋 永 守 趙 載 厚 李 珪 範
6	1967, 5. 26-27	건설회관	1. 農村學校圖書館의 地域社會 2. 國民學校圖書館教育課程의 運營方針 3. 中高等學校圖書館 教育課程의 運營方針 4. 學校圖書館基準案 審議 및 採擇	梁 在 仁 金 浣 起 鄭 義 順 金 斗 弘
7	1968, 5. 27-28	계물포고 (260명)	1. 現行圖書館法의 問題點 2. 學校圖書館評價에 關한 考察 3. 圖書館資料의 選擇, 購入, 整理에 있어서의 學 校間의 協同問題	金 坪 勳 崔 星 洛 趙 基 弘
8	1969, 9. 15-17	춘천제일중	1. 바람직한 圖書館法改定試案 —學校도서관을 중심으로— 2. 學校圖書館 運營의 諸問題	朴 泰 臣 安 松 山

회	시 기	장 소	발 표 주 제 명	발 표 자
			3. 漫畫가 兒童教育에 미치는 影響과 圖書館奉仕	柳 在 植
9	1970. 6. 11-13	호수돈여고 (400명)	1.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양성을 위한 독서지도 2. 자율학습을 돕는 학교도서관 운영 3. 초등학교 이동의 학습을 돕는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 4.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선	조 기 홍 윤 영 길 이 순 규 조 제 후
10	1971. 9. 16-17	중앙대학교	1. 학교도서관에 있어서의 사서직의 자질문제 2. 학교도서관에 있어서의 사서직의 신분 인사문제	원 중 린 조 제 후
11	1972. 9. 13-15	계명대학	1.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편에 따른 도서관 교육문제 —공부하는 방법은 어디서, 언제, 누가 지도하려는가— 2. 새로운 학교도서관 개념으로서의 미디어 센터	조 제 후 최 성 략
12	1973. 10. 4-6	광주학생 독립운동관	1. 중고등학교평준화에 따른 도서관의 문제점 2. 새마을 교육과 학교도서관	현 원 명 최 태 정
13	1975.	경희대	學校圖書館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李 正 熙
14	1976.	서강대	學級文庫를 통한 학습증진 형성에 관한 연구	蘇 時 重
15	1977.	유네스코 청소년수련장	地域社會學校 일환으로서의 學校圖書館	박 영 덕
16	1978.	부산교대	韓國先進教育을 위한 學校圖書館育成法	李 珪 範
17	1979.		발 표 없 음	
18	1980.	동국대	司書教師의 人事制度問題	朴 泰 臣
19	1981.	제주학생회관	平生教育和 學校圖書館	崔 星 洛
20	1982.		발 표 없 음	
21	1983.			
22	1984.			
23	1985.			
24	1986.	설악파크	學校圖書館과 圖書館法 改正 方向	李 正 熙
25	1987.	경주코오롱	學校圖書館의 諸問題	金 容 喆
26	1988.		발 표 없 음	
27	1989.	포항공대	새도서관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제문제—관련제 법규상의 문제점 중심—	李 珪 範
28	1990.		발 표 없 음	



2.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운동의 先驅者的 역할을 다했던<sup>4)</sup> 선배님들의 그 教育的 信念과 熱誠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못다 풀 恨(課題)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면서 나아가 21세기의 學校圖書館을 責任진 후배된 우리들의 覺悟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져 보려고 하며

둘째는, 自己犧牲을 무릎쓴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活動에 대하여 圖書館關係政策當局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뒷받침하고 어떤 모습으로 學校圖書館政策을 主導했는지를 살펴보고

끝으로, 21세기를 향한 韓國教育의 課題가<sup>5)</sup> 무엇이며 거기에 걸맞는 학교도서관정책은 어떻게 構想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 선배님들의 40여년간 흘린 血淚의 足蹟과<sup>6)</sup> 이룩해 놓은 터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II. 學校圖書館 어떻게 걸어 왔는가?

—한 세대가 못다 풀 恨—

1. 學校圖書館運動 四段階

學校圖書館이 나아 갈 血路를 찾기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하여 40여년간 헌신했던 선배님들의 14개 分野에 걸친 活動모습을 分析하여 본 결과 韓國學校圖書館運動史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별표 2)

첫단계는 학교도서관의 「胎動·發展期」로 해방이후부터 1963년 제2회 全國圖書館大會가 개최되기까지이고

둘째 단계는 「成長期」로서 1964년부터 1974년까지인데 이기간에 학교도서관 전국대회가 9회까지 개최되는등 그 活動이 극히 왕성하였다. 특히 1974년도는 韓圖協 30년이 되고<sup>7)</sup> 또 高等學校 平準化가 시작되던 해이기도 하였다.

셋째 단계는 「衰退期」로 1975년부터 1984년까지로 이기간에는 많은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떠나고 도서관은 주로 독서지도에 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1985년부터는 「瀕死期」로 이기간은 모든 영역의 活動이 침체되고 다만 21세기를 지향한 韓國教育發展을 위한 청사진이 教育改革審議會(大統領直屬機關)에 의해 착수되었다.

이 4단계를 요약 비유하면, 胎動·發展期는 마지막 새가 알에서 卵乳化하여 나래를 펴는 연습을 하는 때이고 成長期는 目的地를 향하여 마음껏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飛翔하는 모습이고, 衰退期는 그 새가 目的地에 이르지 못하고 갑자기 急降下하면서 깊은 늪으로 곧두박질한 상태이고 마지막 단계는 넓고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오려고 허우적 거리다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이라고 할까?

2. 胎動·發展期(1945~1963)

1) '朝鮮圖書館協會'가 創立되면서<sup>8)</sup> 學校圖書館教育의 早期실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민학교 敎科書에 「도서관 단원」을 設定하였고<sup>9)</sup>

2) 1947년부터 6.25전해까지 '司書實務者講習會'를 연3회나 실시되었는데 이때 學校圖書館에 관심있는 敎師(學校)가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sup>10)</sup>

4) 李珪範, 새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의 제문제, 圖書館文化('90. 1. 2), 한국도서관협회, p. 20.

5) 교육개혁심의회, 최종보고서 III. 21세기로 향한 한국교육, 교육개혁심의회 pp. 1-7.

6) 註 2

7) 한국도서관협회,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 한도협, 1974

8) 上同, 元鍾麟, 朴泰石의 圖書館思想研究—그의業績에 나타난人間像을 中心으로—. 圖書館研究(1981. 1. 2), 韓圖協, pp. 21-22

9) 도서관 단원 : 1947년 국어 6의2 제17과

10) 참가교: 경복중, 보성중, 송도중, 중앙중, 동구여상, 성신여중, 이화여중, 제3공립여중, 진명여중, 풍문여중, 장춘국민학교 (11개교)

<별표 2>

學校圖書館關係 活動領域別 統計  
(도협 및 교육부 각 대변지에 게재된 것)

종	단계 활동분야		I 발전기	II 성장기	III 쇠퇴기	IV 번사기	계
			1946~63	'64~74	'75~84	'85~91	
1	학교도서관 태동 발전상 소개		14	6	·	·	20
2	학교도서관협회 회원가입 학교		116	262	63	9	450
3	한도협대변지 게재 논문		22	86	29	11	148
4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		7	33	6	3	49
5	전국도서관대회 참가학교도서관		평균 100	평균 200	평균 70	평균 40	
6	교 육 행 정 당 국 의 관 심 도	학교도서관 장학정책 수립·실천	5	9	2	2	18
7		전국, 시도별 사서교 육자격연수	5	11	3	·	19
8		시·도별 일반실무연 수	4	10	8	3	25
9		학교도서관교육 연구 대회, 시범학교	10	20	2	1	33
10		교장, 교감, 장학사 를 위한 세미나	1	14	·	·	15
11		교육부대변지 논문게 재	·	1	6	·	7(도서관)
		·	2	14	9	25(독서)	
12	부회·지구별협의회활동 (결성, 총회)		6	23	5	5	39
13	지구별협의회 자체연수·연구 발표		·	17	10	2	29
14	한국도서관관상 수상자 (단체·개인)		·	2	1	·	3(단체)
			·	5	10	6	21(개인)

※14개 분야 활동영역의 구체적 내용(별지)은 지면 관계로 생략함

※도협 대변지(도협월보 1958~1979, 도서관연구 1981, 도협회보 1982~1987, 도서관문화 1988~)

※교육부 대변지(문교월보 1969~1981, 文敎行政 1982~1990. 10, 문교월보 1990. 11, 12., 교육월보 1991~)

3) 1950년대초는 6.25의 渦中에 冊이 귀하고 학교환경이 말이 아닌 시절에도 晋州·馬山·釜山 등 慶南일원에서 學校圖書館運動이 요원의 불길마냥 일어났고, 심지어 '열람실 없는 도서관'이 운영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경남 의령국민학교)

4) 1955년에 韓國圖書館協會가 設立되면서 국립 중앙도서관·문교부 및 연세대·이화여대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圖協은 司書教師養成講習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5) 1958년도에 韓圖協 代辯誌가 필경등사판 「圖協月報」가 創刊되고 60년도에 活字體로 바뀌면서 學校圖書館運動은 誌面을 통하여 본격적인 모습을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6) 1962년에 최초로 全國圖書館大會가<sup>11)</sup> 개최되었는데 全國圖書館人은 물론 특히 學校圖書館의 기쁨은 아주 형언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圖書館法 制定의 부른 꿈을 그해의 建議事項으로 제시함으로써 드디어 1963년에 「圖書館法令」이 제정되었던 것이다.<sup>12)</sup>

### 3. 成長期(1964~1974)

1) 이 기간에는 별표 2에서 처럼 14개 활동영역 모두에 걸쳐 풍성한 收穫을 거둔 시기였다.

2)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① 全國圖書館大會가 9번이나 개최되고

② 「圖協月報」계제 논문의 대부분이 학교도서관 관계자료들이고

③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sup>13)</sup> 학교도서관의 좌석수와 도서수를 규정한 일이다. (1973. 9. 14 제3차 개정시)

④ 學校圖書館關係 研修會가 모든 教師·校長·校監·장학사에 이르고 司書教師 定員配定까지 하는

### <별표 3> 제1회 전국도서관대회 참가학교 도서관 명단

(도협 및 교육부 각 대변지에 게재된 것)

여 고		남 고			
1	광주여고	1	경기고	22	서울사대부중
2	대구신명여고	2	경기공고	23	인천송도중고
3	대구여중	3	경동중고	24	수도공고
4	덕성여고	4	경북고	25	수원북중농고
5	마산여고	5	공주사대부고	26	승문중고
6	부산여고	6	공주중	27	양정고
7	상명여고	7	광진중상고	28	오산중고
8	신광여고	8	군산사범	29	원주중
9	영화여중	9	광주제일고	30	인천교대부국
10	이화여고	10	균명고	31	인천서림국
11	인천여상	11	대광고	32	인천수고
12	여천여중	12	대동상고	33	인천창영국
13	인천인성여중고	13	대전고	34	제물포고
14	인천인일여고	14	대전공고	35	중앙중고
15	전남여중고	15	덕수중고	36	진주고
16	정신여고	16	동양공고	37	청주상고
17	중앙여중	17	마포고	38	춘천고
18	청주여중	18	보성중고	39	춘천중
19	품문여중고	19	부산고	40	한밭중
20	한성여고	20	부산대신중	41	해동고
		21	서울공고	42	위문중고

등 실로 학교도서관이 살판 났다 할 정도였다.

⑤ 각종 학교도서관의 연구·시범학교운영도 그 극에 달할 만큼 많이 전개되었다.

⑥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도서비'제도가 폐지됨에<sup>14)</sup> 따라 학교도서관은 그 나라를 잃게 되어 乘勝長驅하던 飛翺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슬픔의

11) 1962. 7. 21-22. 승의여고와 중앙교육연구소에서 개최되고 참가한 학교도서관은 남42, 여20(총62개교)이며 71명이 참가하였음. (별표 3)

12) 도서관법 : 총4장29조 부칙으로 1963. 10. 28 법률 제1424호

13) 총18조 부칙으로 1969. 12. 4 대통령령제 4398호

14) 1970. 3 育成會法の 발표와 함께 학교도서관운영비(종전에는 사친회비에서 학생도서비로 충당)는 육성회비에서 지출 못하게 됨

시기이기도 하였다.

4. 衰退期(1975~1984)

1) 이 기간에는 학생도서관이 사라지면서 교장·교감·장학사 등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도 사라지고, 각급 학교도서관의 협회가입수는 물론 전국도서관대회 참가수도 급격히 줄었다.<sup>15)</sup>

이때부터 학교도서관은 교육담당이나 학교관리자의 뇌리로부터 점점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다.

2) 이때 학교도서관 정책은 '독서지도'쪽으로 바뀌게 되었고 여기에 발맞추어 등장한 것이 「자유교양추진회」의 活動이었다.

3) 서울특별시위원회에서는(당시 教育監 李昌鉞)<sup>16)</sup> 연3회에 걸쳐 각급학교에 巨額의 도서구입비를 특별 배정하기로 하였다.

4) 그러나 여전히 학교도서관계 教育법령의 未備로 인하여 有能한 司書敎師들이 한사람 두사람씩 눈물을 먹음고 도서관을 등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主人없는 학교도서관이 되고 말았다.

5. 瀕死期(1985~1991)

1) 위에서 본 것처럼, 主人없는 學校圖書館에 客이 판치게 되었으니 어찌 그 집이 온전하게 지탱될 것인가? 이 시기에는 비록 도서관만이 아니라, 學校平準化가 실시되면서 課外熱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國家 전체가 안절부절하였다.

2) 그리하여 1985년도에 大統領직속기관으로 「敎育改革審議會」가 구성되어 우리 教育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分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비로소 '21세기'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한국교육의 청사진이 마련된 시기였다.

3) 이 期는 학교도서관 40년이 다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수나 사서교사의 수는 실로 한심할 지경이었다.<sup>17)</sup> 따라서 학교도서관도 有名無實한 존재로, 사서교사는 걸림돌 내지 退任末期의 安住處로 여겨진 비참한 모습이 었다.<sup>18)</sup>

6. 先輩들이 못다푼 恨-남긴 課題-

學校圖書館運動史 40여년간(주로 1980년도까지) 선배님들이 論議하고 主張하며 建議한-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일이지만- 問題點들, 곧 그들이 못다푼 恨들을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物的 要素面

학교도서관 운영·관리 전반에 걸친문제로서

- ① 도서관의 施設·設備의 基準 설정
- ② 資料의 基準과 정리 방법 明示
- ③ 예산확보(도서비 부활)등이고

2) 人的 要素에 관한 것으로는

- ① 司書敎師의 資格과 身分人事문제-승진·호봉등-
- ② 각급학교 사서교사 배치기준
- ③ 근무시간(이는 도서관 개관시간과 관계됨)

15) 별표 2의2.5

16) 李昌鉞: 1965 경기고등학교장 재임시 한도협 '상무이사'역임('65-67)

17) 1990년 현재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수

※문교부, 문교통계연보(1990). 한도협, 한국도서관통계(1990)

구분 \ 수	학 교	도 서 관	사서교사
국민 학교	6,335	3,186	186
중 학 교	2,474	1,685	130
고 등 학 교	1,683	1,597	285
계	10,492	6,468	601

18) KBS TV2 추적60분. 학교도서관 이대로 좋은가? (1986. 5)

④ 사서교사의 양성<sup>19)</sup> 사서직원의 신분인사 문제등이며

3) 機能(活動)面에서는 學校圖書館 利用指導 및 讀書指導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냐의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이 문제였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님들이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학교기본시설로서의 사명을 다해 보기 위하여 전개한 온갖 노력과 애절한 호소는 한번도, 한가지도 그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만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된 根本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장에서 살펴지겠지만 한마디로, 위와 같은 내용을 具體的으로 규정한 文教法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法治國家에서는 法治行政이므로 그 아무리 좋은 政策案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施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根據法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法令에 근거하지 않는 行政行爲라면 그것은 一時的 潛定的인 것에 그치고 말게 된다.

III. 課題解決에 얼마나 誠意를 다했는가?

—수박 겉 핥기식 彌縫策—

위에서 본 것처럼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의 基本施設로서의 본연의 使命을 다해 보려는 온갖 노력과 教育的 信念에 대해, 이를 도와주며 懸案問題解決의 열쇠를 쥔 政府(教育當局)는 얼마나 어느 정도로 慣心과 熱意를 보였으며, 그 결과 學校圖書館의 活路는 어느정도 트이게 되었느냐 이다.

1. 行政(教育部)의 慣心度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의 基本시설의 하나로 그 教育的 機能을 다하는데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을 提示하고 그 充足을 要求한데 대한 教育行政當局이 보인 慣心과 反應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政策面에서

① 해방직후 국민학교 교과서에 「도서관」단원을 설정하는 것을 필두로 6.25의 와중에서도 학교도서관을 세우고

② 「圖書館法」에 '學校圖書館章'을 두어<sup>20)</sup> 각급 학교에 도서관 설치를 義務化하고

③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도 '도서실'설비를 의무화하고 좌석수와 비치도서수도 명시하였고<sup>21)</sup>

④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 '도서실에 비치할 설비종목과 수량'을 규정하고<sup>22)</sup>

⑤ 학교도서관의 育成 및 活性化 方案을 獎學指導計劃으로 수립·실시하고

⑥ 司書教師 養成을 위한 講習을 비롯하여 도서관 일반 실무강습(연수)도 수십차례 실시하고(별표 2의 7.8)

⑦ 各市道에 司書教師(33명) 定員을 配定하는 획기적인 勇斷을 내리기도 하고<sup>23)</sup>

⑧ 各市道 학교도서관 담당장학사會議를 개최하고<sup>24)</sup>

⑨ 기타 校長·校監·獎學士를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의 개최, (별표1의 10) 도서 구입비의 특별배정 등이다.

2) 研究活動面에서는

① 文教部 또는 各市道の 教育委員會로 學校圖

19) 도협월보에 소개된 것을 종합하면, 문교부 및 각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실시한 사서교사(자격)강습회 이수자는 약 2,336명이나 됨

20) 제1차 도서관법: 제3장 제25조~27조

제2차 도서관법: 제5장 제35조~37조

21) 제3조 ③항, 제7조

22) 다만 종목만 규정하였음.

23) 1968. 2. 25 문교부가 서울4 부산3 경기3 강원2 충북2 충남3 전북3 전남4 경북4 경남4 제주1명을 각 배정함

24) 1974. 3. 29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22명 소집

書館研究 또는 示範學校를 指定運營하여 각종 研究發表會도 수십차례 개최하고(별표2의 9)

② 各市道 學校圖書館 地區別協議會(研究會)가 실시하는 自體研究發表會(研修會)를 후원하고(별표 2의 12, 13)

③ 文敎部 代辯誌(문교월보, 文敎行政)의 論壇과 特輯으로 학교도서관이나 讀書指導에 관한 內容을 게재하기도 하고(별표2의 11)

④ ‘全國學校圖書館研究大會(敎育分科)’의 개최와 「學校圖書館研究誌」<sup>25)</sup> 「學校圖書館運營의 實際」<sup>26)</sup>등을 발간하는 등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그 활성화에 많은 慣心을 보였다.

2. 수박 겉 핥기식 彌縫策인가?

이상으로 미뤄볼 때, 교육부당국으로서서는 첫째로 學校圖書館의 設置義務化 둘째, 필요한 장서수와 좌석수 설비종목 등의 규정, 셋째로 司書敎師의 養成敎育과 配定, 配置의 義務化 등 學校圖書館存立의 3要素를 外形上으로 충분히 갖추게 한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후의 學校圖書館의 활동은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 거의 瀕死에 가까운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지 않는가?

그러면 그 근원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본다.

“學校圖書館 敎育關係法令의 구체적인 制·改正이라는 根源의 터 위에서 行하는 能動的·積極的인 敎育行政이 아니라, 學校圖書館 正常化를 위한 학교도서관 관계인의 끈질긴 主張과 애절한 呼訴에 마지 못하여 임시변통으로 취한 彌縫策에 불과한 行政 措置”때문이라고…

만약 그들이 直心으로 現在의 敎育問題點에<sup>27)</sup> 착안 未來指向的인 敎育環境改善을 위한다면 法治行政의 당연한 귀결로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먼저 制定하였거나 改正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放置하고 있는 것일까?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는 비단 당국에만 돌릴 수 없다. 학교도서관을 아끼는 우리 모두의 學校圖書館 政策 立法推進方法上의 미숙에 기인한 결과가 아닌가 自省하여야 한다.

1) 學校圖書館 關聯事項

지금까지 圖書館令이나 敎育法令상으로 심히 문제가 된 事項은 ① 학교도서관의 시설·자료의 기준과 ② 司書敎師·실기교사(司書)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國民的 合意에 의해 制·改正된 內容을 보면 별표 4, 5와 같다.

<별표 4>

A. 도서관법중 학교도서관 관계사항

해당조항	도서관법(1963. 10. 28 법률 제1424호)	순문개정도서관법(1987. 11. 28, 1990. 12. 27 법률제4268호)	도서관진흥법(1991. 3. 8 법률제4352호)
입법사항			
학교도서관 설치의무화	제25조(설치)	제35조(설치)	제34조(설치)
시설·자료 구비의무화	제5조(시설)	제6조(시설, 자료) ②대통령령 위임	제5조(시설, 자료) ②대통령령 위임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배치의무화	제6조 각령에 위임	제7조(…배치) ①대통령령 위임	제6조(등배치) ①대통령령 위임

25) 1964, 10 대한교육연합회 산하 학교도서관 연구회 제1집

26) 1960, 6 경남교육연구소 국판 450p. 양장본

27) 註 5

B. 동 施行令중 관계사항

해당조항 입법사항	도서관법 시행령 (1969. 11. 3 대통령령제 4191호)	도서관법 시행령 全文改正 (1988. 8. 16 대통령령 12506, 1990. 13 대통령령 12895)	도서관진흥법시행령 (1991. 4. 8 대통령령 13342)
시설·자료 기준	규정한것 없음	제3조 별표(1)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기준에 의하되 교수·학습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사항)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배치기준	제6조①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국민학교-36학급을 기준1인 또는 2인, 중·고교-학생수 1,200명 기준으로 1인 또는 2인)	제4조 별표(2)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함(국민학교-36학급을 기준 1인 또는 2인, 중·고교-24학급기준으로 1인 또는 2인)	제4조 대통령으로 정한다(위임사항) 단, 부칙2조에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를 잠정유효화 시켜둠

<별표 5>

A. 교육法중 학교도서관 관계사항

해당조항 입법사항	교육법 (1949. 12. 31 법률 제86호)	
사서교사 실기교사 자격	사서교사	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양성강습을 받은자 3. 教育大學院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司書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실기교사	1. 전문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자 2. 大學·專門大學졸업자로서 재학중 예능·체육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자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자

B. 동 施行令중 관계사항

해당조항 입법사항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학교시설·설비기준령 (1969.12.4 대통령령 제 4398호)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 (1977.5.30 문교부령 제 408호)
개 정	1970.2.12한글화(대령제 14359호 38차 91.2.1 대통령령제 13284호)	12차 1988.4.24, 제13차 1991.2.1(대통령령제 1328호)	1988.2.22 문교부교시제 88-3호(학교교구·설비에 관한규칙)
시설·자료 기준	제53조2 ②항에서 위임함 →	제5조 별표3 ①항6호 도서실 설치의무화 ⑥항 도서실의 열람 좌석수 및 비치 도서수 명시함	
시설·자료 기준		11차개정(1984.8.2)부칙 ②항에서 위임함→	제3조, 별표4설비의 종목과 기준에서 종목만 명시함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배치기준	제40조③항 제43조③항중의 '특수교사'속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함		

A. 施設 및 資料의 基準

(1) 圖書館法上: 1차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大統領令에 委任하였다.

(2) 同施行令上:

① 1차때에는 規定되지 않았다.

② 2차때에는 教育법시행령(제53조2)에서 위임받아 制定된「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르기로 사실상 위임하였으며

③ 圖書館振興法에서는 다시 大統領令에 재위임하였다.

(3) 학교시설·설비기준령상

① 1969년에 制定된 4년후인 1973년에 제3차개정때(대통령령제6854호) 비로소 규정되었는데(다만 도서실 열람좌석수와 비치도서수만 규정함) 다음과 같다.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 분	열람좌석수	도 서 수
국민 학교	보통교실 겸용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 학 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 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20권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고 등 학 교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 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50권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그후 17년이 지난 1991년 제3차 개정까지 한번도 수정보완되지 않고 있다.



B. 設備의 種目과 基準

(1) 圖書館法上 : 규정한바 없다.

(2)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

이는 1977년에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제5조②항 : 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할 설비의 종목과 수량)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종목만 규정하였음).

구 분	설 비 의 종 목
도 서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 열람용 책상과 결상</li> <li>· 도서목록 카드함</li> <li>· 서가 카운터</li> <li>· 기타 도서관에 필요한 설비</li> </ul>

(3) 학교교구 및 설비의 기준

이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1984년 제11차 개정 때 그 부칙②항에 “도서관 설비의 종목과 수량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고시한다”하고 4년후인 1988년에 위의 대통령령인 규칙을 문교부 고시하여 「학교교구 설비기준」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서관 설비의 종목은 종전 그대로였다.

C. 司書教師·실기교사(司書)의 資格

이는 教育法令上에만 명시되어 있는데

① 司書教師는 教育법 제79조①항 별표1과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sup>28)</sup> 제1장2나(교원자격종별검정대상)에 나올 뿐이다.

② 실기교사(司書)는 同 제79조①항 별표1과 교원자격검정시행규칙<sup>29)</sup> 제17조1호 별표1(시험검정의 응시자격)과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제1장2나(교원자격종별 검정대상자)에 명시되었다.

D. 司書教師의 배치기준

(1) 圖書館法上 :

① 1·2차 양자에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② 圖書館振興法에서는 다시 大統領令에 재위임하였다.

(2) 教育법시행령상 :

① 제40조③항(중학교의 경우)와 제43조③항(고등학교의 경우) 두곳에 각각 “특수교사와 양호교사를 정원의외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0)</sup>

② 따라서 司書教師는 이 ‘특수교사’안에 포함시키는쪽으로 해석하고 있다.<sup>31)</sup>

2) 問題點

(1) 再委任 規定

① ‘학교 도서관의 시설 자료기준’과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등을 圖書館振興法은 舊法과는 달리 모두 ‘대통령령’에 委任하였고(제5조②항, 6조②항)

② 위임받은 同施行令은 다시 ‘대통령령’에 再委任하고, (제4조) 한편 부칙 2조에서 도서관법시행령 별표2(사서교사 배치기준)를 잠정적으로 존치시켰다.

(2) 再委任規定의 效力과 實現可能性

A. 法理上的 效力

① 재위임은 後法優位의 원칙에 따라 先法인 教育법시행령은 後法인 도서관법시행령의 委任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그러나 이것은 法理的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文化部 직제 법률로 教育部 소관인 學校圖書館 및 司書敎書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겠느냐이다. 다시 말하면 同施行令이 위임한 大統領령이 어떤 종류인지 확실치 않지만, 첫째로, 教育법령(예 : 教育법시행령, 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교구·설비기준등)이거나, 둘째로 우리의 선배님들

28) 1989. 1. 21 양정 15710-32호

29) 1976. 1. 8 문교부령 제437호

30) 여기의 특수교사란 ‘특수한 기술을 담당하는 교사’로 정의하고 있고, 그나마 국민학교에는 없다.

31) 註3의 청원의 답신 내용을 보면 사서교사를 이 특수교사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해석상 특수교사에 포함시킬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전자라면 사서교사는 특수한 기술적으로 전락되는 셈이다.

이 일찍이 主張한 바 있는 '學校圖書館 運營令'같은 특별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外國立法例처럼<sup>32)</sup> '學校圖書館法'이 제정되면 금상첨화이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教育部 所管事項이다.

③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이와 같은 경과조치의 입법취지가 앞으로 制定될 새 대통령령에서 '司書敎師配置 義務化'라는 立法方向을 규제하려는 效力을 노린데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法理上의 무리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 본래 경과조치는 舊法에 의해 既得한 權利나 기타 有效한 法執行 結果를 新法에서도 그대로 보호해 주려고 할 때 규정하는 것이 常例다.

㉡ 그러나 동부칙 제2조가 잠정적으로 유효화시킨 구령 별표2(사서교사 등의 배치)는 그 시행당시 實效性을 발휘한 적도 없었고 또 현재 任用·配置되어 있는 극히 소수의(註17) 사서교사들의 既得權마저 별표2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기득권으로 하려면 구령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그러나 그런 규정은 없다). ㉢ 더구나 동별표2는 母法(도서관법)이 폐지되어 덩달아 죽어버린 명령의 한 조항에 불과한데 이것을 潛定有效化시킬 수 있겠느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잠정유효화시킨 동규정은 學校圖書館의 입장을 고려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굳이 이를 合理的으로 有效化시킬 意圖라면 本條에서 규정했어야 옳다. 이와 같은 事例가 한국 어느 法令에 있던 말인가?

B. 實現可能性—強制力 문제—

圖書館振興法令의 學校圖書館 關係規定을 본 필자는 학교도서관 40여년간 맴돌다 다시 제자리로 복귀 21세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한숨지었다. 그 생생한 증거를 살펴보자.

① 1963년의 위임이 1973. 77년에서야 제정됨 : ㉠圖書館法 및 同施行令이 1963年 制定된 6년 후인 1969년에야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제정되

었는데도 학교도서관(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치 않다가, 1973년 동기준령 제3차 개정때 비로소 '도서실의 열람좌석수와 비치도서수'만을 前近代의—10年 후도 내다 못보는—방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특별히 도서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全특별실의 기준 설정과 함께 도매금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했고, ㉡ 1969년의 동기준령의 위임사항인 '도서실 설비종목과 수량'에 관한 사항도 1977년에서야 비로소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이에 설비종목만 규정한 것이다.

② 수십차례의 法令개정에도 응답없었음 : ㉠ 1991년 오늘까지 4차례의 圖書館法令의 制·改正과 ㉡ 30차례의 教育法의 制·改正, 교육법시행령은 38차, 그리고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13차나 각각 制·改正되었으며, 또 1977년의 '학교교구·설비기준'으로—문교부고시로—제정되었다. 그러나, 정말 1985년 21세기 教育政策이 마련되지<sup>33)</sup> 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한번도 '學校圖書館과 司書教育'에 관한 사항을 未來志向的 모습으로 다룬적이었다. 실로 한심스럽다 못하여 피를 토할 지경이다.

③ 피리블면 춤추고, 노래부르면 장단맞추고, 애곡하며 가슴쳐야 할텐데...<sup>34)</sup>

그간 30년이 지나오면서 教育關係法令이 圖書館法令의 委任事項을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受容하여 補完·改正하지 않았던 理由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反省하고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마디로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법령 아닌 도서관법령에다 규정하려 한' 발상부터 法理的인 문제를 스스로 야기한 愚를 犯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학교교육은 교육부의 권한(고유)이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이며 사서교사는 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 교사이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육법(시행령, 기준령, 기준, 규칙

32) 日本은 1953년에 「學校圖書館法」제정 1958. 1966년대 1, 2차 개정함

33) 註 5

34)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7장 32절

등)에서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法<sup>35</sup>이 아닌 圖書館法에서 알가월부할 성격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도서관에 관한 一般法이요 基本法으로서의 圖書館法(振興法)에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권고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教育部소관인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확실히 教育법에서 직접 다룸이 理想的이며 實效的이라고 생각한다.

⑤ 1963-90년까지 3차례의 도서관법의 制·改正이 모두 문교부 소관업무였는데도 그 위임법령 제정에 한번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물며 소관부서마저 바뀐 지금에 와서 도서관 진흥법령의 학교도서관 교육관계사항을 教育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立法活動을 전개하겠느냐는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⑥ 더구나 教育부에 圖書館 專擔部<sup>36</sup>마저 없고 잦은 人事移動에 따른 一貫성이 미흡한 教育行政의 前例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한국교육 44년동안 문교부장관이 31번이나 바뀌었으니 과연 어떤 實效性있는 教育政策이 마련될 수 있겠는가)

⑦ 후술하는 바와 같이 教育部의 代辯誌인 문교행정, 문교월보에서 學校圖書館機能의 重要性을 스스로 論斷한 적이 아직 한번도 없고 ⑧ 교육개혁심의회마저 그의 최종보고서 III-21세기를 향한 한국교육—에서 그랬고 ⑨ 師範大學의 教育課程運營에도 도서관학은 소외당했다. ⑩ 일선 학교현장에서 당하는 차별대우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라?

#### IV. 21세기, 學校圖書館 必要한가?

—이젠 춤추고·장단맞추며, 기쁨을 처야 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암울하기만 한 학교도서관의 現位置—瀕死狀態—에 처한 우리 學校圖書館關係人 모두는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① 학교도서관이 없으면 없는대로, 있어도 자습실이나 독서실로 둔갑 有名無實한채 그 존재필요성까지 의심받는 서글픈 상태로 지내야 하겠는가? ②

도서관의 일반적·전통적 활동인 자료의 보관과 대출이라는 文獻資料만을 위주로 운영하는 이른바 教科外 活動(Extra-Curriculum Activity)이나 餘暇善用같은 엑스트라 역할로<sup>35</sup>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③ 學校教育을 적극적으로, 멋있게 支援·補助하는 基本施設로서 教育目標達成과 教育課程遂行에 기여하는 본연의 使命을 다하면서 21세기를 향한 한국교육과제해결에 크게 一助하는 存在로 도약할 것인가?

##### 1. 21세기를 향한 한국교육과제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을 效率的으로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의 基本施設이다. 따라서 教育目標·方向·計劃 등에 어떻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느냐가 학교도서관의 기본방향이며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한국교육과제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方法이 오늘의 21세기를 향한 學校圖書館政策이 되어야 하겠다.

##### 1) 21세기 국가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

(1) 학교는 教師와 學生이 어떤 媒體를 중심으로 연결된 組織體요 學習活動은 그 속에서 生活이다. 그러므로 學校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自己의 삶을 보다 創造的으로 영위할 수 있게 各自의 潛能力을 開發·무한한 想像力을 키우고 價值觀을 정립하는 것을 도와주는 教育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教育的 環境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學校의 教育方法은 學生各自가 自發的으로 참여하고 思考하고 探究하며 個人差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21세기를 향한 한국교육은 急變하는 未來社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평생토록 生産的인 社會成員이 되기 위한 有能한 한국인을 길러 주는데 있다. 따라서 ① 미래사회는 어떤 형태의 사회이며 ② 거기에 적합한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③ 또 그러한 인간을 어떻게 길러 낼 것인가 ④ 그러한 일에 학교도서관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모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35) 金容喆,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도서관문화(1989. 8. 9), 한도협, p. 2

(3) 다가올 2,000년대의 우리 국가 사회는 확실히 ① 民主福祉社會 ② 高度産業 情報社會 知識集約社會요 그리고 ③ 開放된 國際化社會가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전망하고 따라서 이런 사회에 알맞는 韓國人像은 ① 自主의 人間 ② 創意的 人間 ③ 道德의 人間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sup>36)</sup>

教育은 바로 그러한 人間像을 지닌 한국인을 길러내는 일이다. 이 일은 우리 教育의 현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터위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 教育의 모습은 個性이 무시되고, 入試爲主의 私設學園式 教育課程의 운영, 그리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非人間的인 教育環境을 들지 않을 수 없다.<sup>37)</sup> 바로 이런 현상을 바로 잡는 일에 學校圖書館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 教育의 質을 높일 學校圖書館

(1) 지금의 教育방법은 4·50년전의 그것과 다를 바 없고 學校環境 역시 비슷하다. 學校教育은 敎師가 敎室에서 敎科書를 가지고 注入式 講義로 잘 가르쳐 졸업만 시키면'다 된 것으로-정상적인 教育으로-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고로 이러한 落後되고 안일한 현실에 구태의연하게 安住하려는 비전 (Vision) 버린자들에게는 學校圖書館이나 司書敎師가 없기 때문에 教育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든가, 또 學校圖書館이 있고 司書敎師의 活動때문에 학교교육이 더잘 되어 간다고 말하지는 결코 않을 것이다.

(2)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① 質 높은 學校教育 곧 教育體制의 效率化를 위해서 학교의 그 어떤 기본시설보다 주요한 역할을 다한다고 하며<sup>38)</sup>

② 21세기를 지향한 우리교육의 과제해결에 빼

놓을 수 없는 機能을 지니고 있고(註 5)

③ 理論上은 그렇다치더라도 實定法上으로<sup>39)</sup> 이에 學校圖書館의 設置必要性이 강조되고 있는 이상 '21세기를 겨냥한 學校圖書館政策'은 어떤 難關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2. 21세기 學校圖書館 育成을 위하여

-이제는 춤추고 장단맞추며, 가슴쳐다-

1) 필자는 21세기를 겨냥한 學校圖書館育成策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提示할 能力이 없다. 또한 그럴 必要性마저 희박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미 先驅者의 所任을 다한 선배님들에 의해 얼마나 많이 提案되었던가(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하여) 그들의 主張과 提案·建議內容은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21세기를 지향한 學校圖書館育成策이 되고도 남는 것들이다. 그위에 덧붙일 名案이 필자에게 없다.

만약 덧붙인다면 이는 주제넘기 그지없는 짓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다만 다음과 같이 呼訴하고 싶을 뿐이다.

1) 政府에게

學校圖書館運動史 40여년간 한국도서관협회의 代辯誌를 통하여, 그리고 이 大會席上에서 피리를 불고 노래부르며, 哀哭하였으니 이제는 춤추고 장단맞추며 가슴을 쳐다오! 政府는 聽覺장애자도 視覺장애자도 아니며, 精神지체자는 더더욱 아니지 않는가? 이제는 國民에게 反應을 보여라

2) 教育行政當局에게

참으로 21세기를 지향한 우리교육을 염려한다면 먼저 學校圖書館의 最基本要素만이라도<sup>40)</sup> 갖추도록 하자. 그런 후에 '學校圖書館法' 내지 '學校圖書館運

36-37) 註 5

38) 李珪範, 韓國先進教育을 위한 學校圖書館 育成策, 도협월보(1978. 10), 韓圖協, pp.12-13.

39) ① 敎育법시행령(제53조 ②항)

② 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5조①항 6호, ⑥항 별표 3)

③ 학교교구·설비기준(제3조 별표 4)

④ 도서관 진흥법(제34조)

40) 학교도서관 3요소중 시설과 자료는 이미 敎育법시행령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교구·설비기준에 다있다. 다만 司書敎師만 敎育법령이 어디에도 그 배치규정이 없다.

營令'이라도 제정하자. 이를 위해 教育部에 學校圖書館擔當部署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教育部(文敎部)는 그의 代辯誌가 20년동안 발표한 論壇(時論)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관하여

단 한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과 특집으로 다룬 것은 단 한번 뿐이며 그것마저 문교부 자체의 意見提示는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별표 6)

<별표 6> 교육부 대변지의 논단·특집에 게재된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계자료

구분		대변지		시론·논단		특집·특별기획	
학 교 도 서 관	문교 월보	1969~ 1981		1972. 10	학교도서관의 합리적 운영과 전인교육-현승중		
	문 교 행 정 · 문 교 월 보	1982~ 1989 (1990)		1982. 8  學校圖書 館 運營	○우리나라 圖書館의 現況과 그 改善方向-盧啓鉉 ○學校圖書館運營의 活性化 方案-朴大權 ○學校圖書館機能의 轉換期 와 그 對策-李正熙 ○우리學校의 圖書館 運營 -李貞煥 ○圖書館이용과 讀書의 生活 化-박태진		
	교육 월보				○學校圖書館 運營의 實際 -나동성		
독 서 교 육	문 교 월 보	1975. 10	독서의 생활화 -편집부-	1972. 10  1975. 10	○독서와 인격형성-이명권 ○각급학교의 독서지도 -이응백  ○독서와 인간형성-이명권 ○학습독서지도법-김병원 ○이동기 독서지도-박봉배 ○청소년기 독서지도 -이응백		
	문 교 행 정 · 정 ·	1984. 10 1985. 10 1986. 10 1990. 7	독서교육은 어떤가 -하근찬 독서와 자아혁신 -하등룡 교육과 독서문화 -김경희 독서와 인격형성 -엄기원	1982. 10(讀書指導)	○學校讀書 生活化를 위한 추진계획-獎學官室 ○學校讀書指導의 方向-趙載厚 ○學校讀書指導 強化를 위한 提言-孫東仁 ○나의 讀書指導 體驗記-金貞愛 ○自律的인 讀書態度的 形成-윤경혁 ○全人敎育을 위한 讀書의 生活化指導-金容姬 ○平生敎育의 基盤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讀書 指導-梁謹錫		

문 교 월 보		1985. 11(讀書教育의 再認識) ○좌담: 讀書文化의 讀書教育—金烈圭 金海仁·金著煥·邊海明·崔泰祥 ○學生讀書實態를 診斷한다.—公報官室 ○文敎部 讀書教育 強化方案—崔泰祥 ○학교圖書館과 독서교육—趙載厚 ○靑少年의 成長發達과 讀書環境—李延燮 ○외국의 讀書教育 경향과 研究課題—金炳元
------------------	--	--

※문교월보(1969~) 文敎行政(1982~) 문교월보(1990) 교육월보(1991~)

<별표 7>                    교육부 대변지의 논단·특집에 게재된 21세기 주제 학교교육관계자료

발 표	'논 단' 제 목	발 표	'특 집' 주 제
文敎行政 1987. 1	2000년대의 교육이념(황산덕)	文敎行政 1982. 5	평생교육의 진흥(평생교육과 학교교육 외 2편)
" 1987. 4	21세기를 향한 외국인의 육성(홍용선)	" 1983. 3	2000년대를 향한 컴퓨터교육(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컴퓨터 요원 양성 외4)
" 1988. 1	21세기의 사회화 교육(김선양)	" 1983. 8	우리교육,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2000년대를 겨냥한 거보외 3)
" 1990. 1	90년대의 교육(김중철)	" 1984. 5	2000년대를 향한 靑少年 教育(청소년과 학교교육 외5)
" 1990. 2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김시중)	" 1985. 2	21세기를 향한 교육발전(21세기의 교육의 과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외6)
" 1990. 3	21세기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안정수)	" 1986. 2	교육의 質의 高度化(21세기의 도전과 한국교육과제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문교정책 외7)
※1987 21세기를 향한 한국교육 —교육개혁심의회 최종보고서Ⅲ—  대 문교월보: 1969~1981 변 文敎行政: 1982 지 문교월보: 1990. 11~12 교육월보: 1991		" 1987. 5	2000년대의 教師像(교사의 가치관과 역할 외3)
		" 1989. 8	미래사회를 위한 컴퓨터교육(도서관의 전산화전망 외5)
		교육월보 1991. 7	학교시설의 발전과제(학교시설의 당면과제 외9)

또한 21세기를 主題로 한 논단과 특집이 16편이나 되지만(별표 7) 이중 학교도서관의 現代教育的 機能에 대한 글이 한편도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學校圖書館 不在라는 부끄러움의 탈을 활짝 벗어버리자!

3) 教師에게

아무리 入試爲主의 단편적 지식암기식 교육현장에서 挑戰을 받고 있다 하여도 未來指向的 全人教育, 質 높은 學校教育이 되고 教育體制의 能率化에 學校圖書館이 기여하는 역할이 多大하다는 점을 認識하

고 圖書館的 學習方法을 指導하자!

4) 司書教師 同志에게

(1) 教育法令上 司書教師는 딛고 설 現任所가 없다. 이렇게 만든 違憲的 惡法條項 때문에 疎外될대로 疎外당하여 教師로서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한심한 경우도 경험하였으리라... 司書教師는 '사서교사 자격'이라는 文書쪽지 그 자체로만 의미를 지닐 뿐 학교에 발 붙일 根據가 없다. 대한민국 어느 教育法令에서도 '사서교사를 임용·배치하라'는 條項은 단 한 곳도 없으니 말이다.

(2) 이는 오늘날 우리 후배들만 당한 모욕적 처사가 아니다. 선배님들은 이미 30여년전부터 당한 수모다. 그러나 그들은 法規와 行政의 뒷받침에서 學校圖書館運動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오로지 現代教育에서 圖書館的 學習方法을 빼놓을 수 없다는 教育的 信念과 召命感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켜 왔던 것이 아닌가 우리도 바로 이점을 본받자!

5) 師範大學에게

(1) 소크라테스나 페스탈로찌가 말한 것처럼 教師는 學生을 옆에서 도와주는 助力者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 손에 쥐어 줄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學習方法의 學習이 학생의 몸에 베이게 해야한다. 이것은 바로 '圖書館的 學習方法'에 의해서만 能率化를 期할 수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教師 스스로가 이러한 教授·學習體制를 아는 者 몇이나 되는가? 師大教育課程 必須選擇科目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도서관학개론'을 속히 부활시키자! 入試爲主의 교실과 자습실에서 교과서 공부와 학교교육의 王道로 착각하고 있는 젊은 教師들을 더 이상 배출시키지 않게 말이다.

6) 韓國圖書館協會에게

다른 館鍾別 圖書館은 몰라도 學校圖書館만은 圖協에 의해 發展·成長되었으며, 한편 그에 의해 衰退하고 瀕死之境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리라. 그 결과 요즘 各級學校에서 圖協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自省하고 60년대처럼 다시 한번 2000년대를 향한 組織的이고 內實있는 支援策을 계속 강구하자!

V. 할 말이 어찌 더 없으랴!

이상으로서 祖國光復 直後 美軍政期 故 朴泰石 선생에 의하여 국민학교도서관 교육을 필두로 시작한 한국학교도서관은 6.25와중 慶南一圖에서 먼저 胎動하고<sup>41)</sup> 60년대의 最盛期, 70년대의 내리막길 그리고 80년대의 瀕死에 이르는 동안의 모습을 통하여 2000년대를 志向하는 90년대의 우리학교도서관을 어떻게 키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學校圖書館이 오늘날 왜 이처럼 침체·빈사에 이르게 되었느냐이다.

그렇게 만든 主犯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所在만 확실히 밝힌다면 學校圖書館의 밝은 내일을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主犯은 바로 '司書教師'이다. 이 主犯인 사서교사는 圖書館法令을 제외하고는 ① 교육법령이 제정된지 43년 동안 ②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선포된지 22년간 ③ 학교교구·설비기준(舊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이 告示된지 14년동안 檢問·檢索 한번 받지 않은채 백주大路를 活步하고 있는 것이다. 國家의 모든 行政은 法治行政이다. 教育行政도 예외일 순 없다. 主犯을 체포하지 않는 것은 明白한 職務怠慢에 의한 法の 不履行이다. 2000년대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犯人은 반드시 체포·처단되어야 한다. 그 처단은 종래처럼 수사기관의 임의처분에 의할 것이 아니라 모름직이 재판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主文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각급학교에는 반드시 적당수의 사서교사를 배치하라"고...

學校圖書館을 살리려면 司書教師를 살려야 한다. 그러면 2000년대의 학교교육은 生動할 것이다. 그것은 學校教育을 담는 그릇이고, 司書教師는 그 그릇을 닦고 관리하는 主人(Master-Key)이니까.

41) 사서(교사)강습은 서울에서 먼저 실시했으나(註 5) 6.25로 인하여 학교가 피난하게 되어 서울지역보다 경남지역에서 자연히 학교도서관운동이 먼저 전개됨.

끝으로 이 主題를 준비하던 중 圖協을 통한 學校圖書館運營을 전개한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모습과 애끓는 呼訴文을 調査·耽讀하면서 司書教師로 재직하는 내가 왜 여태까지 이런 資料에 接하지 않았는가 하고 晚時之歎하였다. 한편 2000년대를 향한 教育改革의 旗手로서의 學校圖書館의 發展策을 제시하던 時期는 1960년대 후반 美國 멜본고등학교 (NASA 인근에 위치)에서 미래교육프로그램 15장 (21세기 강좌)<sup>42)</sup>을 敎育課程으로 운영하던 것과 때를 같이하였다는 점에 더욱 感歎하였다.

司書教師 同志여러분!

선배님들이 그렇듯이 빈사기에 처한 우리 學校圖書館의 再生方案을 血淚로서 絶叫하는 우리들도 “自身的 敎育信念과 學校圖書館關係人들의 인색한 受容 자세간에 야기되는 심한 갈등속에서 매일 근무하고 있다는 事實, 그래서 人生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재미있는 것이다.”<sup>43)</sup>라는 司書로서의 生活哲學을 지니고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42) Griffith, P.I. 편집부역, 미래敎育프로그램 15章, 제4의 물결, 서울: 大經出版社, 1985. pp.248-272.

43) Gardner, R.K., Library Collections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 N.Y.: McGraw-Hill Book co. 1981. p.184